

2023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

2023. 7. 27.

기 획 재 정 부

목 차

I. 경제활력 제고

1. 투자·고용 촉진

| | |
|---|---|
| (1-1)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| 1 |
| ①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| 1 |
| ② 추가공제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? | 1 |
| (1-2)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신설 | 2 |
| ①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| 2 |
| ②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로 한정한 이유는? | 2 |
| (2)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·원천기술 확대 | 3 |
| ① R&D 세액공제 개요 | 3 |
| ②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요 | 3 |
| (3)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(리쇼어링) 지원 강화 | 4 |
| ①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| 4 |
| ② 기대효과 | 4 |
| (4) 신재생에너지 생산·이용 기자재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 | 5 |
| ①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| 5 |
| ② 감면 적용품목 | 5 |
| (5) 우수인력의 국내유입 지원 | 6 |
| ①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제도 개요 | 6 |
| ② 사택제공이익 관련 개정 이유 | 6 |

2. 기업경쟁력 제고

| | |
|--|---|
| (1)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| 7 |
| ① 현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요 | 7 |
| ② 추진 배경 | 7 |
| ③ 가업승계시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(5→20년)하는 이유는? | 8 |
| ④ 가업상속·승계 사후관리 요건 중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'중분류→대분류' 내로 확대하는 이유는? | 8 |
| (2)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| 9 |
| ① 제도 개요 | 9 |
|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| 9 |

| | |
|--|----|
| (3)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시기 조정 | 10 |
| ① 글로벌최저한세 개요 | 10 |
| ② 국가별 실효세율·추가세액 계산방식 및 적용 예시 | 11 |
| ③ 소득산입규칙 적용 예시 | 12 |
| ④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 예시 | 12 |
| ⑤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시기 1년 유예 배경 | 13 |
| (4) 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| 14 |
| ① 현행 제도개요 | 14 |
|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| 14 |
| (5)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 | 15 |
| ① 현행 제도개요 | 15 |
|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| 15 |
| (6)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| 17 |
| ① 현행 제도개요 | 17 |
|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| 17 |

3. 창업·벤처 활성화

| | |
|--|----|
| (1)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 | 18 |
| ① 직무발명보상금 과세제도 개요 | 18 |
|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| 18 |
| (2) 기술혁신형 M&A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| 19 |
| ① 현행 제도 개요 | 19 |
|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| 19 |

II. 민생경제 회복

1. 서민·중산층 부담 완화

| | |
|---|----|
| (1)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| 20 |
| ① 제도 개요 | 20 |
| 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| 20 |
| (2)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| 21 |
| ①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개요 | 21 |
| ② 개정 내용 | 21 |

| | |
|---|----|
| (3)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| 22 |
| ① 기부금 세액공제 개요 | 22 |
|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| 22 |
| (4) 반려동물 동물병원 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| 23 |
| ①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? | 23 |
| ② 100대 다빈도 질병에 실제 반려동물 진료항목의 대부분이 포함되는지? | 23 |
| (5) 맥주·탁주 종량제 물가연동제 폐지 및 세율조정방식 개선 | 24 |
| ① 개정 취지 | 24 |
| ② 현행 방식과의 차이점 | 24 |

2. 소상공인·중소기업 지원

| | |
|---|----|
| (1)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| 25 |
| ① 현행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개요 | 25 |
| ②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 | 25 |
| (2)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신설 | 26 |
| ① 환급제도 신설 배경 | 26 |
| ② 환급제도 개요 | 26 |
| (3)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| 27 |
| ① 제도 개요 | 27 |
| ②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| 27 |

Ⅲ. 선제적 미래 대비

1. 결혼·출산·양육 지원

| | |
|--|----|
| (1)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| 28 |
| ① 도입 배경 | 28 |
| ②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시 줄어드는 세부담은? | 29 |
| ③ 재산용도 제한을 하지 않은 이유 | 29 |
| ④ 공제기간을 혼인 전 2년, 후 2년 이내로 설정한 이유 | 30 |
| (2)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| 31 |
| ① 자녀장려금(CTC) 개요 | 31 |
| ② 자녀장려금 확대 배경 및 내용 | 32 |
| ③ 자녀장려금 대상인원 확대 및 지급금액 증가 효과 | 32 |

| | |
|--|----|
| (3-1) 출산·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| 33 |
| ① 개정이유 및 효과 | 33 |
| (3-2) 근로자 출산·양육 지원금액 손금·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 | 33 |
| ① 제도 개요 | 33 |
|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| 33 |
| (4)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| 34 |
| ① 제도개요 | 34 |
| ② 개정내용 및 이유 | 34 |

2.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

| | |
|---|----|
| (1)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대상 확대 | 35 |
| ① 개정 취지 | 35 |
| (2)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소득요건 기준연도 개선 | 36 |
| ① 개정 취지 | 36 |
| ② 적용시기 | 36 |
| (3)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| 37 |
| ① 개정 취지 | 37 |
| (4)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| 38 |
| ① 제도개요 및 개정내용 | 38 |
| ② 세부담 완화 배경 | 38 |

IV.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

1. 납세자 권익 보호

| | |
|---|----|
| (1)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 | 39 |
| ① 제도 개요 | 39 |
| 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| 39 |
| (2)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 | 40 |
| ① 제도 개요 | 40 |
| 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| 40 |
| (3)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 폐지 | 41 |
| ① 제도 개요 및 수수료 폐지 이유 | 41 |

| | |
|--|----|
| (4) 부동산 양도소득세 알기 쉽게 새로 쓰기 | 42 |
| ① 개정이유 | 42 |
| ② 개정내용 | 43 |

2. 조세회피 관리 강화

| | |
|---|----|
| (1)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 | 44 |
| ① 제도 개요 | 44 |
| ② 신탁재산가액의 평가방법 | 44 |
| (2) 임직원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여 | 45 |
| ① 도입 이유 | 45 |
| ② 제도 개요 | 45 |
| (3)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| 46 |
| ① 매입자납부특례 제도 내용 | 46 |
| ②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배경 | 46 |
| (4)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 | 47 |
| ① '우회덤핑'의 의미 | 47 |
| ②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 배경 | 47 |
| (5) 관세포탈 등 명단공개 대상 확대 | 48 |
| ① 제도 개요 | 48 |
| 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| 48 |
| ③ 납세자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| 48 |
| (6)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| 49 |
| ①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| 49 |
| ② 주택개념 구체화로 세부담에 변화가 있는지? | 50 |
| ③ 적용시기 | 50 |
| (7)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보완 | 51 |
| ① 제도보완 취지 | 51 |

3. 과세형평 제고 및 기반 강화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(1)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| 52 |
| ① 현금영수증 발급 시 혜택은? | 52 |
| ②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경우는? | 52 |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(2) 플랫폼 종사자의 소득과약 기반 공고화 | 53 |
| ①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소액부징수 개요 | 53 |
|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| 53 |
| (3)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범위 합리화 | 54 |
| ① 제도 개요 | 54 |
| ②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 | 54 |

V. 기타

| | |
|--|----|
| (1) 연결납세방식 조기 포기 허용 예외사유 신설 | 55 |
| ① 연결납세 제도 개요 | 55 |
| ②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| 55 |
| (2)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| 56 |
| ① 제도 개요 | 56 |
| ② 제도 효과 | 56 |
| (3) 간이과세 포기 철회 근거 마련 | 57 |
| ① 간이과세 제도 개요 | 57 |
| ② 간이과세 포기 철회 도입 취지 | 57 |
| (4)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부가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 종료 | 58 |
| ① 천연가스(CNG)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종료 취지 | 58 |
| (5)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확대 | 59 |
| 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 | 59 |
| ② 개정 취지 | 59 |
| (6) 용도세율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 | 60 |
| ① 제도 개요 | 60 |
| ② 개정 내용 | 60 |
| (7) FTA협정관세 적용 물품의 보정이자 면제사유 명확화 | 61 |
| ① 보정제도 개요 | 61 |
| ② 개정 취지 | 61 |
| (8) 공매제도 개요 | 62 |
| ① 제도 개요 | 62 |
| ② 공매 절차 | 62 |
| (9) 공매재산 취득 시 매수대금의 상계제도 신설 | 63 |
| ① 도입취지 및 내용 | 63 |
| ② 제도 개요 | 63 |

I

경제 활력 제고

1. 투자·고용 촉진

(1-1)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

(상세본 1p)

①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

- (개정 내용)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기본공제율을 상향하고, 국내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* 대상으로 추가공제(10/15%) 신설

* (예) 총 제작비용 중 국내지출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영상콘텐츠 등

| 구 분 | 기본공제 | | 추가공제 | 최대 공제율 |
|-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---|
| | 현 행 | 개정안 | | |
| 대기업 | 3% | → 5% | 10% | 15% |
| 중견기업 | 7% | → 10% | 10% | 20% |
| 중소기업 | 10% | → 15% | 15% | 30% |

- (개정 취지) 세액공제율을 해외 주요국 수준*으로 상향하여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통해 영상콘텐츠 산업을 주요 전략산업으로 육성

* (미국·프랑스) 20~30%, (독일·영국) 20~25%, (캐나다) 25% 등

② 추가공제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?

- 국내 콘텐츠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산업 파급효과(투자·고용 등)를 감안한 항목으로 구성

※【주요국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요건】

(미 캘리포니아) 총 제작비 75% 이상 국내 지출, (프랑스) 자국 내에서 프랑스어로 제작, (영국) 주요 제작자 내국인 비율 등, (호주) 자국 지출비용에 한정

- 구체적인 요건은 관련 부처, 업계와 협의해나갈 예정이며,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확정·발표할 계획

[1-2]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신설

(상세본 2p)

①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

- 중소·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를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경우 해당 투자액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
- ⇒ 양질의 영상콘텐츠 제작 기반 확대를 위해 민간 투자 유인책을 마련하여 투자재원 확충

②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로 한정된 이유는?

- 문화산업전문회사*는 특정 프로젝트(영상콘텐츠 등) 수행만을 목표로 자산을 운영하여 자금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

* 「문화산업법」에 따라 자본 납입증명서, 사업계획서, 자산관리계약서 등 등록 필요

(2)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·원천기술 확대

(상세본 3p)

① R&D 세액공제 개요

□ 기업 연구·인력개발비*의 일정 비율 세액공제

* (공제대상) 기업부설연구소,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, 재료비, 시설임차료 등

| 구분 | 일반 | | 신성장·원천기술 | 국가전략기술 |
|------|-------|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| 당기분 | 증가분 | | |
| 중소기업 | 25% | 50% | 30~40% ¹⁾ | 40~50% ²⁾ |
| 중견기업 | 8~15% | 40% | 20~30% ¹⁾ (코스닥 상장 25~40%) | 30~40% ²⁾ |
| 대기업 | 최대2% | 25% | 20~30% ¹⁾ | |

1) 20%(중소기업 30%) + 최대 10%{ (신성장 R&D 지출액 / 매출액) x 3 }

2) 30%(중소기업 40%) + 최대 10%{ (국가전략기술 R&D 지출액 / 매출액) x 3 }

②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요

□ 기업의 사업용 설비와 시설 등(토지, 건물 등 제외)에 대한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 세액공제(기본공제+추가공제)

투자세액공제율(%)

| 구분 | 당기분(기본공제) | | | 증가분 (추가공제) |
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|
| | 대기업 | 중견기업 | 중소기업 | |
| 일반 | 1 → 3 | 5 → 7 | 10 → 12 | 3 → 10 |
| 신성장·원천기술 | 3 → 6 | 6 → 10 | 12 → 18 | |
| 국가전략기술 | 15 | 15 | 25 | 4 → 10 |

* : 임시투자세액공제('23년 한시 적용)

※ 총 투자세액공제액 = (투자액 × 당기분 공제율) + (3년평균대비 투자 증가분 × 증가분 공제율)

1) 국가전략기술 : 6개 분야*, 54개 기술, 46개 시설

* ①반도체, ②이차전지, ③백신, ④디스플레이, ⑤수소, ⑥미래형이동수단
(+ ⑦바이오의약품 추가 예정)

2) 신성장·원천기술 : 13개 분야*, 262개 기술, 185개 시설

* ①미래차, ②지능정보, ③차세대 SW 및 보안, ④콘텐츠, ⑤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, ⑥차세대 방송통신, ⑦바이오·헬스, ⑧에너지·환경, ⑨융복합 소재, ⑩로봇, ⑪항공·우주, ⑫첨단소재·부품·장비, ⑬탄소중립

(3)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(리쇼어링) 지원 강화

(상세본 5p)

①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

□ (개정 취지) ①국제 경제질서 변화 및 ②산업혁신 가속화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 증대

① 미·중·러 등 선진국의 자국 우선주의 확산 및 핵심산업·자원 공급망 확보 경쟁 심화에 따른 국내산업 공급망 안정 필요성 증대

② 현행 유턴기업 업종요건(세분류 상 동일업종)은 사업구조 전환이 빈번한 산업현장에 탄력적 대응 곤란*

* (예시) 내연기관차 부품 기업(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)과 전기자동차 부품 기업(전기장비 제조업)은 중분류 상 업종 상이

→ 자동차 부품기업이 사업구조 전환(내연차 부품 제조 → 전기차 부품 제조)을 수반한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 적용불가

□ (개정 내용) 유턴기업 ①세액감면 기간 확대 및 ②업종요건 완화

①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 시 최대 10년간 소득·법인세 감면

* (현행) 5년 100% + 2년 50% 감면 → (개정) 7년 100% + 3년 50% 감면

(※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 시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3년+2년 감면)

② 국내복귀 후 세분류 상 다른 업종을 영위하더라도, 산업부 전문위원회*에서 업종 유사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세액감면 적용

* 「해외진출기업복귀법」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

② 기대효과

□ 국내복귀 유인효과 및 유턴기업 지원세제 유연성 제고를 통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로 국내 투자·고용 창출 증대

[4] 신재생에너지 생산·이용 기자재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

(상세본 8p)

①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

- RE100 등 전 세계적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추세로 국내 신재생 에너지 생산·이용기반 강화를 위해 '26년 말까지 연장 적용
 - * RE100 선언 : 기업 사용 전력량의 100%를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목표의 캠페인. 애플 등 일부 회원사가 납품업체에 RE100 이행 요구
- 중소·중견기업이 수입하는 것으로서 신재생에너지 생산·이용에 필수적이나 국내제작이 어려운 물품의 관세를 감면(50%)

② 감면 적용품목

- 태양광에너지(1개), 풍력에너지(13개), 수소·연료전지(2개) 생산·이용 기자재 총 16개 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 적용 중(조특칙 별표13)
- 개정 이후 관계부처(산업부), 업계(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등)를 통해 대상품목 정비 필요성에 대한 의견수렴 및 후속조치 예정

[5] 우수인력의 국내유입 지원

(상세본 9p)

①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제도 개요

- 외국인근로자에게 종합소득세율이 아닌 19% 단일세율 적용
 - 단, 비과세, 공제, 감면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

② 사택제공이익의 관련 개정 이유

- '21년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개정시 사택제공이익을 '과세 제외 소득'에서 '비과세 소득'으로 변경
 - 이에 따라 단일세율 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사택 제공으로 인한 이익을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결과 발생*
 - * 단일세율 특례적용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택 제공이익이 과세 대상에 포함된 것임
 - 그간 부칙을 통해서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였으나, 이번 개정을 통하여 항구적으로 제외하려는 것임

2. 기업경쟁력 제고

(1)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

(상세본 14p)

① 현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요

-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최대 600억원*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10% (증여재산가액 60억원 초과시 20%) 증여세율 적용
 - * 한도(억원) : 업력 10년 이상 300 / 20년 이상 400 / 30년 이상 600
- 증여일로부터 5년간 가업유지 등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, 위반시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부과
- 가업승계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시점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 가액에 가산하여 정산하며, 상속시점에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

<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주요내용 >

| 구분 | 내용 |
|--------------|---|
| 대상 | ○ 중소기업 및 매출액 5,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|
| 특례 | ○ 대상자산: 가업기업의 주식 ○ 내용: 증여재산가액 최대 600억원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잔액에 대해 10%(과표 60억원 초과시 20%) 증여세율 적용 |
| 사후관리 (5년) | ○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, 5년 이상 가업 경영 ○ 업종변경 제한: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변경 허용 ○ 지분유지: 증여받은 지분 유지 |

② 추진 배경

- 중기중앙회·중견기업연합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중소·중견기업의 영속성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 제도 개선
 - OECD 최고수준 세율* 등 감안,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
 - * 증여세 최고세율(%): (일) 55 (한) 50 (프) 45 (미) 40 (독) 30 (영) 20 (OECD평균) 26
 - CEO 고령화*로 인해 생전 가업승계에 대한 필요성 확대
 - * 중소기업 대표의 65.3%가 60세 이상(2022년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, 중기중앙회)
 - 대표이사 취임, 가업경영 및 지분유지 등 사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만큼, 제도 본래의 취지 달성에 문제없음

③ 가업승계시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(5→20년)하는 이유는?

- 가업승계 초기 과도한 증여세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
 - 가업상속공제에 적용되는 연부연납 기간이 20년인 점을 감안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

④ 가업상속·승계 사후관리 요건 중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'중분류'→ '대분류' 내로 확대하는 이유는?

- 승계기업이 급변하는 산업구조 및 기업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변경의 범위를 확대*하려는 것임
 - * (현행)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허용 → (개정안) 대분류 내 허용
- 가업상속·승계 후 사후관리기간(5년) 동안 대분류 내에서 자유로운 업종변경 가능
 - 예를 들어, 현재 '플라스틱 욕실자재'(중분류 22) 제조 업체가 '절수형 양변기'(중분류 23)로 제조품목 변경시 중분류 간 변경으로 허용되지 않으나, 제도개선시 업종 변경 가능

< 중분류 내 업종변경 애로 사례 (자료 : 중소기업중앙회) >

- ▶ 플라스틱 욕실자재(중분류 22) → 절수형 양변기(중분류 23)
- ▶ 전기차 축전지(중분류 28) → 자동차 부품제조(중분류 30)
- ▶ 전자부품 제조(중분류 26) → 산업용 로봇(중분류 29)

(2)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

(상세본 16p)

① 제도 개요

- (대손금) 채권 소멸시효의 완성, 채권자의 파산 및 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 처리
- (대손충당금) 채권의 대손으로 인하여 추후 발생할 비용 또는 손실을 추정하여 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
 - ※ 채권의 대손확정 시 대손충당금과 상계

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

-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 특례 신설
 - 국내건설모법인이 해외건설자회사에 사업용으로 지급한 대여금 (이자 포함)의 회수가 곤란한 경우 해당 대여금에 대해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도입
- ⇒ 국내건설모회사의 채권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비용으로도 인정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, 해외건설사업 수주 지원

(3)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시기 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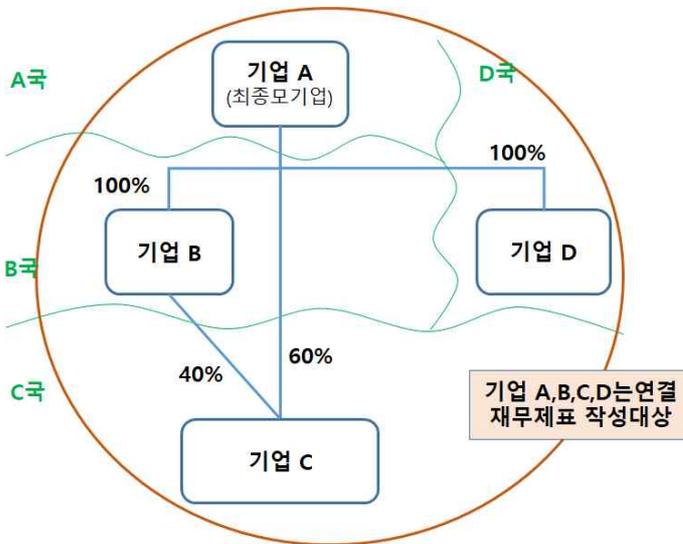
(상세본 17p)

① 글로벌 최저한세 개요

◇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(15%)보다 낮은 세율 적용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 부여

□ (대상) 연결매출액 7.5억 유로(약 1조원) 이상 다국적기업그룹

< 예시 >



- 각 개별기업 A, B, C, D는 지배종속관계로 연결된 그룹
- 기업 A는 기업 B·C·D를 직·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최종모기업
- 기업그룹(A·B·C·D) 연결 재무제표 매출액이 7.5억 유로 이상이면 글로벌 최저한세의 적용 대상

□ (납세액) 국가별 실효세율(=조정대상조세/글로벌최저한세소득)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(15%)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세액 부과

$$\text{※ 추가세액} = (\text{최저한세율} - \text{국가별 실효세율}) \times (\text{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} - \text{실질기반제외소득}^*)$$

* 실질 사업활동 지표(유형자산 및 급여)에 고정율(5%)을 적용하여 공제

② 국가별 실효세율·추가세액 계산방식 및 적용 예시

□ 국가별 실효세율·추가세액 계산방식

- ① 국가별로 구성기업들의 조정대상조세 합계를 글로벌최저한세 소득·결손의 합계(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)로 나누어 실효세율 계산

$$* \text{실효세율} = (\text{조정대상조세 합계}) \div (\text{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})$$

- ②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(15%)에 미달(저율과세 국가)하는 경우, 미달하는 세율에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곱하여 추가세액 계산

$$* \text{추가세액} = (\text{최저한세율}(15\%) - \text{실효세율}) \times \text{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}$$

※ 실질기반제외소득('급여'와 '유형자산 순장부가액'의 일정비율(5%))을 순글로벌 최저한세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음

□ 적용 예시

- X국에 소재한 A기업은 최종모기업으로, Y국에 소재한 자회사 B1과 B2를 소유하고 있고, 각 기업의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음

| | A기업 | B1기업 | B2기업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|
| ① 법인세비용 | 200 | 50 | 45 |
| ② 조정사항(자본에 계상된 조세 등) | 50 | 5 | - |
| ③ 조정대상조세(①+②) | 250 | 55 | 45 |
| ④ 당기순이익 | 800 | 450 | 255 |
| ⑤ 조정사항(조세비용 등) | 200 | 50 | 45 |
| ⑥ 글로벌최저한세소득(④+⑤) | 1,000 | 500 | 300 |

- A기업의 자회사들이 소재하는 Y국의 실효세율은 12.5%
 (= $(55+45)^{\text{③}} \div (500+300)^{\text{⑥}}$), 추가세액은 20(= $(\text{최저한세율}15\% - 12.5\%) \times (500+300)^{\text{⑥}}$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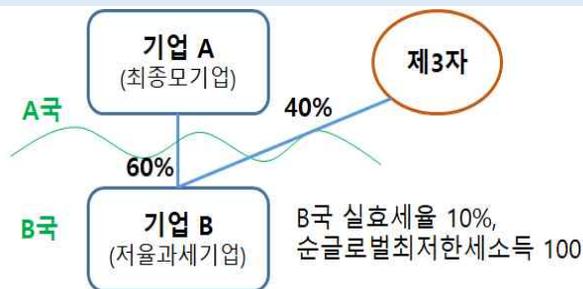
③ 소득산입규칙 적용 예시

□ (최종모기업) 최종모기업(Ultimate Parent Entity)은 모든 저율과세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우선적으로 부담

○ 모기업은 저율과세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중 소득산입비율*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

$$* \text{ 소득산입비율} = 1 - \frac{\text{모기업 외의 다른 소유자가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저율과세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}}{\text{저율과세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}}$$

< 예시 >



① 기업B 추가세액 = $(15\% - 10\%) \times 100 = 5$

② 기업A의 기업B에 대한 소득산입비율 = $(100 - 40) \div 100 = 60\%$

∴ 기업A는 $5 \times 60\% = 3$ 만큼 A국 과세당국에 납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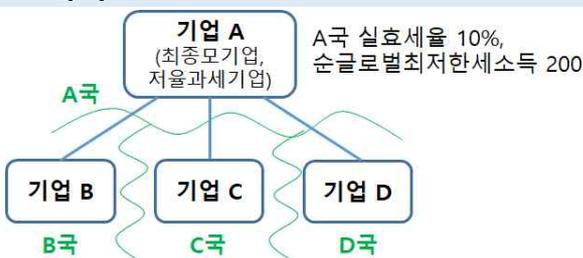
④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 예시

□ 최종모기업이 저율과세되거나 모기업 소재국이 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 적용

○ 저율과세 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을 소득산입보완규칙을 도입한 국가에 납부

○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은 각 국가의 종업원 수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국가로 배분

< 예시 >



① 기업A 추가세액 = $(15\% - 10\%) \times 200 = 10$

② A국은 글로벌최저한세제도 미도입, B~D국은 도입

③ 배분비율

▶ B국 = $50\% \times 0.7 + 50\% \times 0.3 = 50\%$

▶ C국 = $50\% \times 0.2 + 50\% \times 0.4 = 30\%$

▶ D국 = $50\% \times 0.1 + 50\% \times 0.3 = 20\%$

∴ 기업B는 5, 기업C는 3, 기업D는 2를 각각 B국, C국, D국 과세당국에 납부

| | B국 | C국 | D국 | 합계 |
|-------|----|----|----|-----|
| 종업원 수 | 70 | 20 | 10 | 100 |
| 유형자산 | 30 | 40 | 30 | 100 |

⑤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시기 1년 유예 배경

□ 소득산입보완규칙(UTPR)의 시행을 주요국의 시행시기에 맞춰 1년 유예('24.1.1. → '25.1.1.)

- 소득산입보완규칙을 다른 나라보다 먼저 도입시, 국내 외투 기업에 대해 먼저 과세하여 국내 투자환경에 대한 불안정성 우려
- 또한, 소득산입보완규칙은 한국을 제외한 모든 글로벌최저한세 도입예정 국가*가 '25년 또는 그 이후 시행을 예정

* EU, 영국, 일본, 캐나다, 싱가포르, 홍콩, 호주, 뉴질랜드 등

※ 다만, 소득산입규칙(IIR)은 현행대로 '24.1.1. 시행

- 한국이 소득산입규칙(IIR)의 시행을 늦추는 경우, 해외진출 국내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상실함에 따라
 - 국내기업이 한국에 납부할 세액을 소득산입규칙(IIR)을 도입한 다른 나라에 납부하는 상황* 발생 가능

* '24년 IIR을 도입한 국가에 소재한 국내기업의 중간모기업의 자회사가 저율과세 기업으로 추가세액 발생시 → 한국에 납부할 세액을 IIR도입한 국가에 납부

(4) 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

(상세본 18p)

① 현행 제도 개요

- 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 후 새로운 수익용 기본재산 취득 시에는 매각차익에 대해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 과세
-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·건축물을 처분하고 새로운 토지·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해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 적용 중

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

- 대학의 수익용 기본 재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
 - 현재 저수익 자산 처분 후 고수익 자산 대체취득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이 발생하여 저수익 자산을 지속 보유하는 상황
 - 따라서 고수익 자산으로의 대체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대체취득 자산 처분시까지 과세이연
- 아울러, 과세이연 대상 수익용 기본재산 범위에 토지·건축물 외에 유가증권 추가

| 구 분 | 현 행 | 개정안 |
|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대상자산 | 토지, 건축물 | 토지, 건축물, 유가증권 |
| 취득시기 | 1년 이내 | 2년 이내 |
| 과세방식 |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 |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|

⇒ 대학의 적극적인 재정 확충 노력 지원

(5)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

(상세본 19p)

① 현행 제도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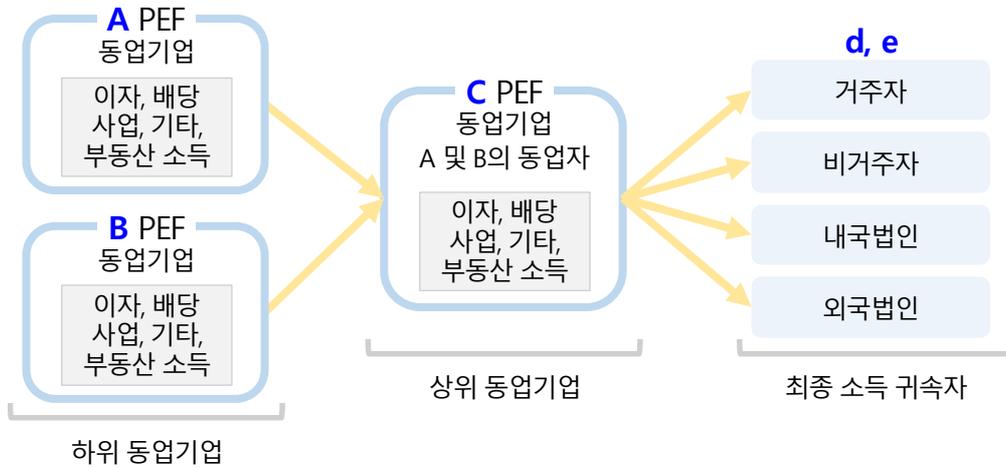
- (동업기업 과세특례)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
법인소득을 주주에게 배분하여 주주 단계에서 소득·법인세 과세
 - 기관전용 사모펀드 등이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주로 활용하여
사모펀드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출자자 단계에서 과세

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

- 모펀드 - 자펀드 구조로 투자하는 경우 자펀드 소득에 대해
모펀드의 출자자 단계에서만 소득·법인세 과세
 - 투자자명부 및 소득배분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기관전용
사모펀드에 한하여 허용
- ⇒ 기업구조혁신펀드*(4호)에 대한 과세특례를 통해 기업구조조정
활성화 지원

* 산은, 수은 등 → 기업구조혁신펀드[모펀드] → 민간 자펀드
<1차 출자> <2차 출자>

〈 동업기업 과세특례 중복 적용 관련 규정 〉



- ① → ② : ①이 ②에게 이익 및 손실을 배분 (이익 및 손실이 배분되는 방향)
 : ②가 ①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, 노무 등 출자

□ 동업기업 소득금액 · 결손금의 계산(조특법 §100의14)

- 하위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· 결손금에 대한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· 결손금(=①×②×③)

- * ① 하위 동업기업의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
 (하위 동업기업을 하나의 거주자/비거주자/내국법인/외국법인으로 보아 계산)
- ② 상위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
- ③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

□ 동업기업 소득금액 · 결손금의 구분(조특령 §100의18)

- 하위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· 결손금은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군별 소득금액 · 결손금 구분에 따라 상위 동업기업에 배분

□ 동업기업 결손금의 배분(조특법 §100의18)

- 결손금 배분 규정*은 하위 동업기업이 상위 동업기업에, 상위 동업기업이 그 동업자에게 배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
- * (수동적 동업자) 결손금 배분 불가 (능동적 동업자) 동업자 지분가액 한도로 배분 등

□ 동업기업 관련 세액의 배분(조특법 §100의18)

- 상위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 및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 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에게 세액 배분

[6]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

(상세본 20p)

① 현행 제도 개요

- 주주가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①지주회사*를 설립하는 경우 또는 ②지주회사에 새롭게 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(조특법 §38의2)

* 주식 소유를 통한 국내회사의 사업내용 지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회사(공정거래법 §2)

- 현행 규정상 올해 말까지 현물출자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한해 지주회사 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적용

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

-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이연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

⇒ 기업집단의 소유·출자구조의 투명성 제고 등 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을 지원

3. 창업·벤처 활성화

(1)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 (상세본 21p)

① 직무발명보상금 과세제도 개요

- 직무발명보상금 종류(출원·등록·실시 등)에 관계없이 근로기간 중 받는 부분은 근로소득, 퇴직 후 받는 부분은 기타소득 과세

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

- (개정 내용) 비과세 한도를 연간 500만원 → 700만원으로 상향하고, 지배주주등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
- (개정 취지) 근로자 등의 직무 발명을 장려하는 한편 지배주주등을 대상에서 제외하여 비과세 제도 남용* 방지

* 실제 연구자가 아닌 지배주주 등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여 소득세 부담 회피

(2) 기술혁신형 M&A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

(상세본 27p)

① 현행 제도 개요

-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*을 합병하거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기술가치금액**의 10%를 세액공제

*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합병등기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,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, 합병등기일 직전 사업연도의 연구·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5% 이상인 중소기업 등

** 기술가치금액 = Max(㉠, ㉡)

㉠ : 특허권 등 평가액 합계

㉡ : 양도가액 - {(피합병·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 × 130%)}

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

- 주식인수 기간요건 완화 및 세액공제 범위 확대

- ① 현재는 동일 사업연도 내 주식 인수*만 허용하나, 다음 사업연도까지 주식 인수도 허용

* 피인수법인 지분의 50% 초과 또는
피인수법인의 지분 30% 초과 + 경영권 인수하는 경우

- ② 기술가치금액 범위를 조정하여 세액공제 범위 확대(순자산시가 130% 초과분 → 120% 초과분)

⇒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M&A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
창업→성장→회수→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투자 선순환 촉진

Ⅱ

민생경제 회복

1. 시민·중산층 부담 완화

(1)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

(상세본 29p)

① 제도개요

-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근로자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
 - (대상주택)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
 - (공제한도) 상환기간·방식 및 금리형태에 따라 연 300~1,800만원

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

- (개정취지) 주택가격 상승,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등을 감안하여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
- (개정내용) 대상 주택 가격 기준 상향 및 소득공제 한도 확대
 - (대상주택) 기준시가 5억원 이하 → 6억원 이하
 - (공제한도) 연 300~1,800만원 → 600~2,000만원

| 구분 | 상환기간 15년 이상 | | | 상환기간 10년 이상 |
|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
| | 고정금리 & 비거치식 |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| 기타 |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|
| 현행 | 1,800만원 | 1,500만원 | 500만원 | 300만원 |
| 개정 | 2,000만원 | 1,800만원 | 800만원 | 600만원 |

[2]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소득공제를 한시 상향

(상세본 31p)

①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개요

- 근로자의 신용카드·직불카드·선불카드, 현금영수증 등 사용분 소득공제(적용기한: '25년말)

| 구 분 | 내 용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|--|-----|---------|---------|--|-----|--|---------|---------|------|--|--|--|---------|--|-----|-----|---------|------|-----|-----|------|-------|---|
| 공제대상 | 총급여의 25% 초과 사용금액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공제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용카드 : 15% ○ 현금영수증·직불형카드 등 : 30% ○ 도서·공연·박물관·미술관·영화관람료 사용분 : 30% (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) ○ 전통시장·대중교통 사용분 : 40% ('23.1.1~12.31 대중교통 사용분 : 80%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공제한도 |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 rowspan="2"></th> <th colspan="2">총급여</th> </tr> <tr> <th>7천만원 이하</th> <th>7천만원 초과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colspan="2">공제한도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기본공제 한도</td> <td>300</td> <td>250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추가공제 한도</td> <td>전통시장</td> <td rowspan="3">300</td> <td rowspan="2">200</td> </tr> <tr> <td>대중교통</td> </tr> <tr> <td>도서공연등</td> <td>-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| | | | 총급여 | | 7천만원 이하 | 7천만원 초과 | 공제한도 | | | | 기본공제 한도 | | 300 | 250 | 추가공제 한도 | 전통시장 | 300 | 200 | 대중교통 | 도서공연등 | - |
| | | | 총급여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7천만원 이하 | 7천만원 초과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공제한도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기본공제 한도 | | 300 | 250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추가공제 한도 | 전통시장 | 300 | 200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대중교통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도서공연등 | | -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② 개정 내용

- 전통시장·문화비 지출에 대한 공제율 10%p 한시('23.4.1.~'23.12.31.) 상향

[3]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

(상세본 32p)

① 기부금 세액공제 개요

□ 개인이 기부금단체에 기부 시 **세액공제**(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산입)

○ (공제율) 1,000만원 이하 **15%**, 1,000만원 초과분 **30%**

○ (공제한도) 기부금 성격에 따라 소득금액의 100% 등으로 달리 적용

① 국가·지자체, 국방헌금 등 : 소득금액 × **100%**

② 그 외 기부금* : (소득금액 - ①) × **30%**(종교단체 10%)

* 사회복지단체, 의료법인, 학술·장학·문화예술·환경 단체, 종교단체 등

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

□ (개정 내용)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'24.12.31.까지 **40%** 공제율 적용

<개정안에 따른 세액공제액 사례>

| 구분 | 현행 | 개정안 | 차이 |
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
| 5천만원 기부 | 1,350만원* | 1,550만원** | +200만원 |
| 1억원 기부 | 2,850만원 | 3,550만원 | +700만원 |

* (1,000만원 × 15%) + ((5,000만원 - 1,000만원) × 30%)

** (1,000만원 × 15%) + ((3,000만원 - 1,000만원) × 30%) + ((5,000만원 - 3,000만원) × 40%)

□ (개정 취지)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기부 장려

(4) 반려동물 동물병원 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

(상세본 33p)

①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?

- 현재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, 질병 '예방' 목적으로 행해지는 일부 진료 항목*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가 부과

* 예방접종, 중성화수술, 병리학적검사 등 농식품부장관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일부 진료항목

- 이번 부가세 면제 조치는 반려동물 양육가구(22, 약 602만 가구)의 동물 진료비 부담* 완화를 위한 것으로 기존 질병 '예방' 목적 외에 '치료' 목적을 추가하고,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

* 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 15만원 중 병원비가 6만원 ('2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)

- 특히, 다빈도 100개 진료항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, 추후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

② 100대 다빈도 질병에 실제 반려동물 진료항목의 대부분이 포함되는지?

- 내과/피부과, 안과, 외과, 응급중환자의학과, 예방/영상진단의학과 등 동물의료 분야별 진료 항목이 폭넓게 포함될 예정

- 동물병원 진료빈도 조사(농림부) 및 수의업계·학계·전문가 논의를 통해 주요 다빈도 진료 항목을 도출하였으며, 이 중 100대 다빈도 진료 항목을 선정하여 면제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

- 동물의료계 및 전문가들은 100개 다빈도 진료항목이 실제 동물 의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진료의 80% 수준을 차지한다고 평가

(5) 맥주·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 폐지 및 세율조정방식 개선

(상세본 35p)

① 개정 취지

- 물가연동제는 매년 물가상승률이 주세율에 의무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어 소폭의 세율 인상이 대폭적인 주류가격 인상의 원인으로 작용
 - 소주 등 종가세 적용 주류와 과세형평을 위해 '20년 도입된 이후 맥주 1병(500ml) 당 3~15원 수준 인상
 - 소폭의 주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, 제조~판매과정의 마진도 가격에 반영해 소비자 부담이 대폭 증가(500~1,000원 인상)
- ⇒ 주세율 조정이 주류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개선

② 현행 방식과의 차이점

- 현행 물가연동제는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라 주세율을 의무·강제적으로 조정

1) 세율 = 직전연도 세율 × (1 + 가격변동지수²)

2) 가격변동지수: 직전 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70~130%의 범위에서 다른 주류와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결정

- 개정안은 법률로 기본세율을 규정하되, 필요시 시행령으로 기본세율의 ±30% 내에서 탄력세율로 조정
 - 물가가 전반적으로 인상되는 상황이라도 주류가격에 변동이 없으면 세율도 그대로 유지 가능

2. 소상공인·중소기업 지원

(1)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(상세본 37p)

① 현행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개요

-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는 ①기본한도와 ②수입금액별 추가 한도를 합하여 산정(소득세법 §35, 법인세법 §25)

| | | 손금산입 한도 = ① + ②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기본한도 | | 일반기업 1,200만원 / 중소기업 3,600만원 |
| ②수입금액별 (=매출액) 추가 한도 | 100억원 이하 | 수입금액 × 0.3% |
| | 100~500억원 | 3천만원 + 100억원 초과 금액 × 0.2% |
| | 500억원 초과 | 1.1억원 + 500억원 초과 금액 × 0.03% |

- 공연·전시회·문화재 관람 입장권 등에 사용된 문화 기업업무추진비의 경우 손금산입 한도의 20%까지 추가 손금산입 허용

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

- 기업이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 손금산입 한도(①+②)의 10%까지 추가 손금산입 허용
- (인정 범위) 「전통시장법」 상 전통시장 구역 내 지출액
 - (사용처 제한) 유흥업 등 소비성서비스업 지출액은 제외
- ⇒ 기업의 전통시장 내 지출을 촉진하여 내수활력 제고 및 소상공인 매출 확대 지원

[2]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신설

(상세본 38p)

① 환급제도 신설 배경

- 개인택시용 자동차를 면세 판매시 자동차 판매자 등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어, 차량 단종 또는 가격 인상으로 개인택시사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
 - ※ (조세특례제한법 부대의견) 기획재정부는 개인택시 차량 면세로 인해 발생하는 매입세액불공제 문제 해결 방안을 2023년 정기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할 것
-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부담이 가중될 경우 택시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, 소비자 부담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제기
- 이에 자동차 판매자가 공급하는 택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를 종료하고 과세 전환하면서
 - 개인택시사업자(간이과세자)의 부가가치세 경감 혜택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후환급제도 신설

② 환급제도 개요

- 간이과세자 개인택시 사업자는 택시차량 구매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구매한 후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환급
 - 환급대행 등을 통해 개인택시 사업자의 환급 절차 부담 완화에 정(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 등에 마련)

(3)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

(상세본 40p)

① 제도 개요

- 재창업자금 용자를 받은 중소기업인 등*에 대해 최대 3년간 체납에 따른 압류·매각 유예, 납부고지 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

*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용자받은 자, ② 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용자받은 자, ③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,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성실경영실패자로 판정한 자

②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

- (개정취지) 불확실한 경기여건 등으로 중소기업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세제지원 확대·연장
 - 징수유예 확대를 통해 조세부담을 완화해줌으로써 사업실패로 일시적으로 세금 납부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인 재기 지원
- (개정내용) 특례 대상인 재기중소기업인에 '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*을 용자받은 자'를 추가하고 적용기한 3년 연장

*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금년 도입된 프로그램으로 현재 신청 접수 및 심사 진행 중(4월~)

Ⅲ

선제적 미래 대비

1. 결혼·출산·양육 지원

(1)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

(상세본 47p)

① 도입 배경

□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공제한도를 '14년 5천만원으로 정한 이후 10년간 물가·소득상승, 전셋집 마련 등 결혼비용의 증가 등을 감안하여 제도 마련

- * 1) 소비자물가('14.1~'23.6.) : 93.7 → 111.1, +18.6%
- 2) 1인당 명목국민총소득(만원): ('14) 3,095 → ('22) 4,249 [+37.3%]
- 3) 주택가격('14.1~'23.6.) : 83.5 → 95.6, +14.5%
- 4) 결혼비용: 신혼집 2.8억원, 혼수 0.2억원 등 3.3억원('23년, ○○결혼정보업체)
- 5) 주택매매/전세가격(억원, '23.6월, 한국부동산원): (전국) 3.8/2.2 (수도권) 5.5/3.0

□ 또한, 우리나라 증여세 부담이 OECD최고수준인 점, 부모입장에서 자녀의 결혼비용을 지원하는 현실, 해외사례 등도 고려해 결정

< OECD 국가 증여세 최고세율 >

| 구 분 | 순위 | 국 가 | 최고세율(%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|---------|
| 증여세 운영 (24개국) ☞ 평균 26% | 1 | 일 본 | 55 |
| | 2 | 한 국 | 50 |
| | 2 | 스 위 스 | 50 |
| | 4 | 아이슬란드 | 46.2 |
| | 5 | 프 랑 스 | 45 |
| | 6 | 미 국 | 40 |
| | 7 | 스 페 인 | 34 |
| | 8 | 아 일 랜 드 | 33 |
| | 9 | 터 키 | 30 |
| | 9 | 독 일 | 30 |
| 11~24 | 벨기에, 칠레, 영국, 네덜란드, 헝가리, 핀란드, 덴마크, 룩셈부르크, 슬로베니아, 리투아니아, 그리스, 포르투갈, 폴란드, 이탈리아: 4~27% | | |
| 증여세 미운영 (14개국) | 캐나다, 호주, 뉴질랜드, 스웨덴, 라트비아, 콜롬비아, 코스타리카, 이스라엘, 슬로바키아, 멕시코, 오스트리아, 노르웨이, 체코, 에스토니아 | | |

- * 1) 증여세 운영하는 OECD 24개국 중 우리나라의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벨기에·헝가리·룩셈부르크·핀란드에 이어 하위 5번째
- 2) 일본은 결혼자금 용도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 천만엔(약 1억원) 공제

②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시 줄어드는 세부담은?

※ (전제) 증여 전 10년 간 공제받은 금액 없고, 신고세액 공제(3%) 미적용

- 부모가 자녀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1억 5천만원 증여하는 경우
 - (현행) 5천만원 공제 후 1억원(세율 10%)에 대한 증여세 1천만원 부담
 - (개정) 5천만원 공제 + 혼인공제 1억원 적용되어 증여세 없음

③ 재산용도 제한을 하지 않은 이유

-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건 간소화
 - 결혼자금의 유형, 결혼비용의 사용 용태가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용도를 일일이 규정할 경우 현실의 다양한 사례 포섭 불가능
 - 재산용도 제한 시 신혼부부가 증빙자료 보관·제출 및 과세관청에 신고해야 하므로 납세협력비용 과도
- 재산용도를 제한하더라도 해당 용도로 사용한 자금의 원천이 증여재산인지 타 재산인지 확인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곤란*
 - * 예) 증여재산이 현금인 경우 해당 재산이 용도에 맞게 쓰였는지 확인 곤란
 - 예) 결혼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은 신혼부부가 증여받은 현금으로 대출상환하는 경우 결혼용도에 해당하는지 확인 곤란
- 재산용도를 제한하는 대신에 ①공제한도 설정, ②공제기간을 혼인 전 2년 + 후 2년(총 4년)으로 한정, ③증여재산 범위도 제한*
 - * 고저가 양수도, 주식상장이익 등 혼인증여공제 취지와 맞지 않는 증여추정·증여의제 등은 공제적용 배제

④ 공제기간을 혼인 전 2년, 후 2년 이내로 설정한 이유

□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제도 취지상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같이 공제기간을 장기간(10년)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

□ 청약, 대출 등으로 혼인신고일과 실제 결혼 시점이 상이한 경우 많아 공제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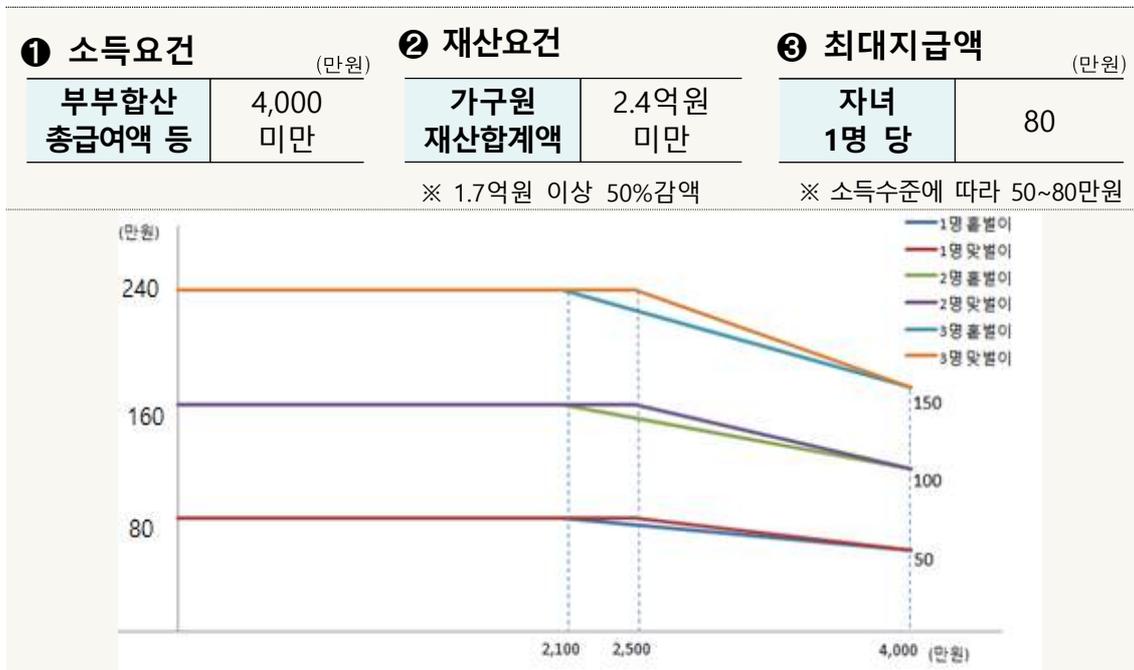
⇒ 결혼 전후로 공제기간을 한정하여, 4년(결혼 전 2년 이내, 후 2년 이내)으로 설정

(2)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

(상세본 49p)

① 자녀장려금(CTC) 개요

- (도입목적)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('14년 도입)
- (지원대상) 근로·사업·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
- (산정방식)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2가지로 분류하고, 소득과 자녀수에 따른 CTC 지급액 산정



- (지급시기) 다음 해 9월 지급
- (지급실적) 58만 가구, 0.5조원('22년 지급)

② 자녀장려금 확대 배경 및 내용

- 자녀 양육가구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해 자녀장려금 대상자와 지원수준을 확대
 - (소득요건) 급여 인상 등 소득수준 상승 등을 감안하여 소득 상한금액을 현행 4,000만원에서 7,000만원으로 상향
 - (최대지급액) 자녀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을 현행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

③ 자녀장려금 대상인원 확대 및 지급금액 증가 효과

- (수혜가구) 현행 58만 가구에서 약 104만 가구로 확대(+46만 가구)
- (지급금액) 현행 0.5조원에서 1조원으로 증가(+0.5조원)

[3-1] 출산·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(상세본 50p)

① 개정이유 및 효과

- (개정이유) 출산·보육수당 비과세 한도(현행 10만원)가 '03년 이후 유지되어 온 점, 저출생 현상 등을 고려하여 비과세 한도 상향
- (개정효과) 출산·보육수당을 지급받는지 여부 및 지급액 수준, 개인별 급여 수준에 따라 세부담 경감효과에 차이가 있음
 - * (사례) 총급여 5천만원인 근로자가 출산·보육수당 매월 20만원 지급받는 경우
세부담 감소 효과 : △18만원 수준 (비과세소득 증가액 120만원 × 세율(15%))
- (현행) 월 10만원 × 12월 = 120만원 비과세 → (개정안) 240만원 비과세

[3-2] 근로자 출산·양육 지원금액 손금·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

(상세본 50p)

① 제도 개요

-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축하금 등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금 및 필요경비 인정

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

- 근로자에게 출산·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을 손비 및 필요경비 범위에 명시적으로 추가
 - 단,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 필요
- ⇒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·양육 지원금의 손금·필요경비 인정 근거를 마련하여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지원

(4)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(상세본 51p)

① 제도개요

-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총급여의 3%를 초과하여 사용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15% 세액공제

| 구 분 | 내 용 |
|---------|---|
| 공제대상 | 총급여의 3% 초과 사용금액 |
| 공제대상 비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진찰·치료·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○ 치료·요양을 위한 의약품(한약포함) 구입 비용 ○ 장애인보장구 및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·임차 비용 ○ 시력보정용 안경·콘택트렌즈 구입 비봉(1인당 50만원 한도) ○ 보청기 구입 비용 ○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○ 산후조리원 비용(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, 1회 200만원 한도) |
| 공제한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근로자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자·난임시술비 : 한도 없음 ○ 그 외 부양가족 : 연 700만원 |

② 개정내용 및 이유

-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출산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비용임을 감안해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
- 보육·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6세 이하자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

2.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

(1)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대상 확대 (상세본 52p)

① 개정 취지

- (현행) 청년도약계좌, 청년형 장기펀드 등 소득요건이 있는 저축지원 금융상품의 경우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는 가입할 수 없음
 - 육아휴직자의 경우 「소득세법」상 육아휴직급여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됨에 따라 상품 가입이 불가
- (개정이유) 근로관계 법령 상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도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는 점을 고려하여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

(2)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소득요건 기준연도 개선

(상세본 53p)

① 개정 취지

- (현행) 청년도약계좌* 등 소득요건이 있는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직전연도 소득(국세청 소득확인증명서)을 기준으로 소득 판단

* 소득기준: 총급여액 7,500만원, 종합소득금액 6,300만원 이하

- 다만, 매년 1~7월 중 가입* 시에는 직전연도 소득확인 증명이 없어 전전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가입하고, 추후 직전연도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배제

* 통상 직전연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은 7월 초부터 가능

- (개정이유) 1~7월 중 가입하는 경우로서 직전연도 소득확인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전전연도 소득 기준도 인정함으로써 가입 이후 비과세 혜택이 배제되는 사례 방지

② 적용시기

- 청년도약계좌, 청년희망적금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도 개정 규정에 따라서 세제혜택 적용

[3]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

(상세본 54p)

① 개정 취지

- (현행) 청년형 장기펀드*의 최소 가입기간은 3년으로,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 시 소득공제에 따른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

* 연 6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40% 소득공제

- 가입한 펀드에 수익률이 낮은 경우에도 가입 후 3년 이내에 가입 상품 변경 불가

- (개정이유) 청년형 장기펀드 간 전환·이체는 해지로 보지 않고 추징하지 않음으로써 청년층의 투자를 지원하려는 것임

(4)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(상세본 56p)

① 제도개요 및 개정내용

- (납입) 연금계좌(연금저축 + 퇴직연금계좌(IRP) 등) 납입액에 대해 일정 금액을 한도로 12%, 15%(총급여 5,500만원 이하) 세액공제

| 총급여액 (종합소득금액) |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연금저축 납입한도) | 세액 공제율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5,500만원 이하 (4,500만원) | 900만원 (600만원) | 15% |
| 5,500만원 초과 (4,500만원) | | 12% |

- (운용) 운용수익에 대해 비과세
- (수령) 연 1,200만원 이하 연금소득에 대해 저율(3~5%) 분리과세
⇒ (개정)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상향

| < 현 행 > | | < 개정안 >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사적연금소득 합계액 | 과세방법 | 사적연금소득 합계액 | 과세방법 |
| 1,200만원 이하 | 분리과세(3~5%) | ⇒ 1,500만원 이하 | 분리과세(3~5%) |
| 1,200만원 초과 | 분리과세(15%) | 1,500만원 초과 | 분리과세(15%) |

* 종합과세 선택 가능

* 종합과세 선택 가능

② 세부담 완화 배경

-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'13년 이후 유지되어 온 점, 그간 물가상승 및 노후생활비 증가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

IV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

1. 납세자 권익 보호

(1)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 (상세본 59p)

① 제도 개요

- 조세불복 시 소액사건 등 경미한 사항*은 국세심사위원회를 생략하거나 주심조세심판관 단독처리 가능

* 소액청구 중 ①사실판단 사항이거나 ②유사 결정례가 있는 경우

- 조세불복은 국세심사위원회(이의신청·심사청구) 또는 조세심판관 회의(조세심판)를 거쳐야 하나,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예외 허용

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

- (개정 취지)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소액사건 범위 확대

- 현행 3천만원 기준은 90년대에 규정* → 경제규모 성장 등을 감안하여 기준 조정 필요

*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: '98년 / 조세심판: '96년

- (개정 내용) 이의신청·심사청구·조세심판 신청 또는 청구 시 소액사건 범위를 확대 (3천만원 미만 → 5천만원 미만)

(2)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 (상세본 p62)

① 제도 개요

- 보정기간(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)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 이내 수정 신고 시, 부족세액에 부과하는 과소신고가산세의 일부*를 감면

* (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) 20%
 (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) 10%

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

- (개정취지) 납세자의 조기 수정신고를 유도하고, 「국세기본법」과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

- 「국세기본법」은 '19.12월 개정을 통해 가산세 감면율이 상향* 되었으나, 「관세법」은 국세기본법 개정 이전과 동일한 수준

* (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): 20% → 30%
 (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): 10% → 20%
 (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): 10% → 현행유지

- 내국세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관세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적용되는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

- (개정내용) 「관세법」 상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

<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현행 및 개정안>

| | | | | | | | |
|-----|-----|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-|----|
| | 기산점 | 1개월 | 3개월 | 6개월 | 1년 | 1년 6개월 | 2년 |
| 현행 | | 100% | | 20% | | 10% | 0% |
| 개정안 | | (동일) | | 30% | 20% | 10% | 0% |

[3]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 폐지

(상세본 64p)

① 제도 개요 및 수수료 폐지 이유

- (제도 개요)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수출입신고인에게 검사에 따른 수수료 부과

* 계산 방법 : 기본수수료(소요시간×2천원) + 교통비·실비 등
(최근 5년간 연간 수수료 규모 : 평균 약 2,500만원)

- (폐지 이유) 수출입물품 검사가 개인의 신청이 아닌 국가의 필요에 의해 시행되는 점을 감안 → 수출입기업 부담 완화

(4) 부동산 양도소득세 알기 쉽게 새로 쓰기

(상세본 65p)

① 개정이유

1] 개관규정 및 개괄규정 부재로 양도세 큰 틀 이해 어려움

○ 부동산 양도세는 일반 국민(1세대 1주택자 등)에게 적용되고 계산 구조가 복잡함에도 양도세 전체 구조를 설명하는 개관규정 부재

○ 각종 특례(1세대 1주택 비과세, 다주택자 중과 제외 등)의 경우 여러 세부 유형이 존재함에도 개괄규정 및 세부 유형 제목 없이 병렬적 서술*

* 같은 조(條)에서 여러 세부 유형을 각 항(項)별로 서술하고 있으나, 조(條)와 달리 항(項)은 제목이 없어 특례 내용 쉽게 파악 곤란

2] 잦은 법령개정이 누적되어 양도세제 지나치게 복잡·난해

○ 부동산가격 과열시 과세 강화, 침체시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이 누적되어 양도세제 복잡 및 조문 내 논리적 연관 부족*

* (예)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(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) 중 보유·거주기간 관련 사항이 여러 항(②,⑤,⑥,⑧,⑫)에 분산되어 서술

3] 서술식 장문(長文), 상이한 내용 동시 기술 등으로 가독성 저하

○ 복잡한 과세요건 등을 단순 나열식으로 기술하여 문장 길이가 길고 한 조(條)에 딸린 항(項)이 많아 의미 파악 및 이해 곤란

○ 같은 조·항에서 유사성이 적은 내용 동시 기술, 예외의 예외 표현 사용 등으로 인해 법령 수요자인 일반 국민 혼란 유발

② 개정내용

- ① 양도세 큰 틀 이해 제고 위해 개관규정 및 개괄규정 신설
 - 일반 국민이 양도세에 대해 최소한 개략적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양도세 계산구조 및 관련 조문을 설명하는 개관규정 신설
 - 한 제도 내에 여러 세부 유형 존재(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등)시, 세부 유형 제목 및 핵심 내용을 설명하는 개괄규정 신설
- ②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복잡·난해한 규정 조문 재구조화
 - 관련 사항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등 논리적 체계에 따라 조문 재배열*
 - * (예)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: ①비과세 대상 주택 요건, ②비과세 대상 부수토지 범위, ③겸용주택 비과세 범위, ④기타 順으로 규정
 - 동일 내용이 자주 반복되는 경우에는 정의규정 신설 후 인용
- ③ 가독성 제고 위해 단문 사용 및 도표·계산식 활용
 - 지나치게 긴 문장은 짧은 단문을 사용하여 분리 기술
 - 예외의 예외 규정은 예외 규정과 분리하여 별도 기술*
 - * 하나의 항에 예외 규정과 그 예외에 대한 예외 규정을 동시 규정시, 단문 형식 이더라도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감안
 - 도표·계산식 활용시 이해가 쉬운 경우에는 도표·계산식으로 대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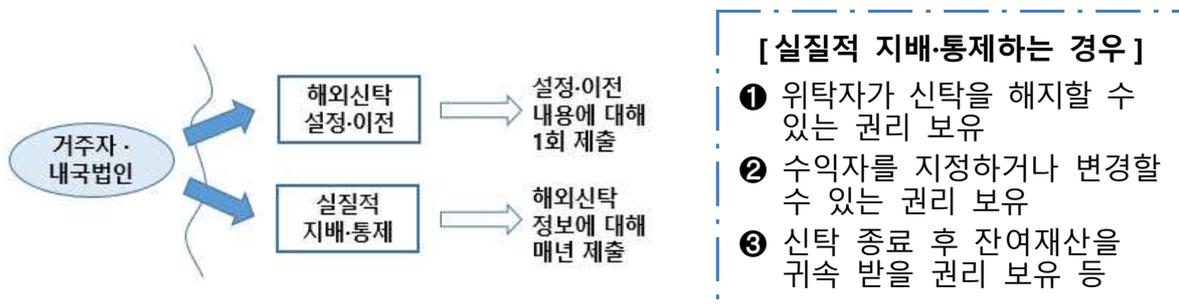
2. 조세회피 관리 강화

(1)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

(상세본 71p)

① 제도 개요

- 거주자·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 또는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하거나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·통제하는 경우,
 - 신탁계약정보, 재산가액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해외신탁명세를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제출
- 불이행시 신탁재산가액의 10% 이하(최대 1억원)의 과태료 부과



② 신탁재산가액의 평가방법

- 신탁재산가액은 신탁 설정·이전일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의 시가(時價)에 따르며, 시가 산정 및 평가가 곤란한 경우 취득가액
 - 신탁재산가액 평가와 관련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61조~제65조 평가 규정을 준용하며,
 - 재산의 종류,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에 따른 평가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취득가액*으로 함

* 현행 해외부동산등 자료제출의 경우 취득처분가액을 기준으로 취득·보유현황 등 신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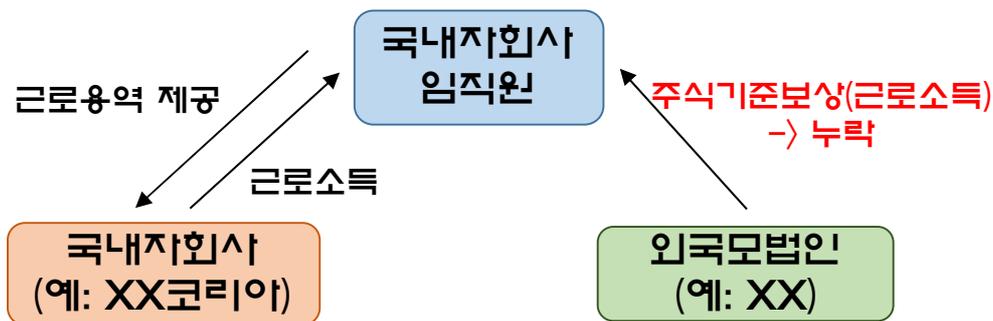
[2] 임직원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여

(상세본 72p)

① 도입 이유

- 국내자회사 또는 지점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외국모법인으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주식기준보상*을 받아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조세회피가 발생

*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,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것 등



- 국내자회사 또는 지점에 임직원의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에 대한 제출의무를 부여하여 조세회피 방지 및 성실신고 기반 마련

② 제도 개요

- 국내자회사 또는 지점에 임직원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에 대한 제출의무를 부여

| 구 분 | 주요 내용 |
|-------|--|
| 제출대상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임직원*의 사용자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* 임직원이었던 자 포함 |
| 제출요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임직원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기준보상**을 행사/지급받는 경우 * 내국법인 임직원: 내국법인 주식 50% 이상 직간접 소유한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임직원: 외국법인 본점·지점, 외국법인 주식 50% 이상 직간접 소유한 다른 외국법인 ** 주식매수선택권, 주식/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 |
| 제출자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주식기준보상등 거래내역 * 주식기준보상등 부여, 행사·지급내역 및 이익, 관련 임직원 인적사항 등 |
| 제출시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주식기준보상등 행사/지급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.10일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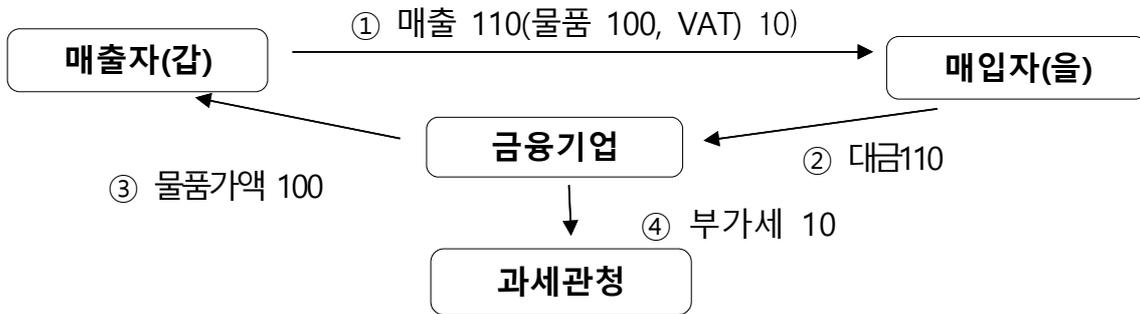
(3)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

(상세본 73p)

① 매입자납부특례 제도 내용

- (개요) 매입자가 물품 구매시 대금을 금융기관의 전용거래계좌*에 입금하면 금융기관이 부가가치세를 과세관청에 납부

* 국민, 농협, 대구, 신한, 우리, 기업, 하나은행 등 7개 금융기관 지정



※ 을이 대금 110(물품가액 100, 부가세 10)을 금융기관에 송금하면 금융기관은 물품가액 100은 갑에게 지급, 부가세 10은 국세청에 납부

- (대상물품) 금지금('08.7월), 고금('09.7월), 구리스크랩('14.1월), 금스크랩('15.7월), 철스크랩('16.10월)

②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배경

- 매입자납부특례 대상을 비철금속류(알루미늄·납·아연·주석·니켈 등)로 확대하여 부가가치세 탈루 방지 및 제도의 실효성 제고

[4]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

(상세본 73p)

① '우회덤핑'의 의미

- 우회덤핑이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특성, 생산지 또는 선적지를 변경하는 등 방법으로 해당 조치를 우회하여 그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의미함
-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에 따른 국내산업 보호의 필요성도 커지며,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수도 증가* 증으로 우회덤핑의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음

* '23.7월 현재 기준 20개 품목, 24건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

②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 배경

- 현행 관세법령은 우회덤핑에 대응하는 별도 절차가 없어, 국내 산업 피해에 적시 대응이 어려움
- 우회덤핑 물품은 기존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현행 신규 물품과 마찬가지로 원심조사로 진행함에 따라 조치까지 장기간* 소요

* 우회덤핑 조사는 일반적으로 완화된 덤핑률 산정과 산업피해 판정이 요구되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나, 신규 원심조사는 통상적으로 12개월 소요

(5) 관세포탈 등 명단공개 대상 확대

(상세본 74p)

① 제도 개요

-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 2억원 이상인 고액·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·체납액 등을 공개 중

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

- (개정취지)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고액의 관세를 포탈하는 자의 명단도 공개할 필요
 - 최근 수입물품 가격 저가신고 등 관세포탈 사례 및 관세포탈 금액이 증가하는 추세*
 - * 관세포탈범 적발 금액 및 건당 금액(억원): ('21) 2,046/29.7, ('22) 3,228/64.6
 - 「국세기본법」은 고액(포탈세액 등이 연간 2억원) 조세포탈범의 인적사항·포탈세액 등도 공개
 - 현행 「관세법」에 의하면 관세포탈액이 크지만 체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* 위법성 정도가 높더라도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
 - * (현행) 1년 경과 체납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고액·상습체납자만 공개
- (개정내용) 관세포탈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포탈 관세 등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자를 명단공개 대상에 추가

③ 납세자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

- 관세포탈범은 현재 명단공개 대상인 고액·상습 체납자보다 불법행위의 정도가 높아 과도한 처분이라 보기 어려움

(6)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

(상세본 75p)

①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

- (주택 개념 구체화) 소득세법은 주택을 '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'이라고만 규정하여,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 예측가능성 저해
 - 「주택법」상 정의 규정을 활용하여, 주택의 시설구조상 특성*을 소득세법상 주택 정의에 반영·구체화
 - * 출입문, 취사시설, 욕실이 각 세대별로 별도 설치되는 등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
- (보유기간 특례) 건축물을 장기간 상업용 등으로 사용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·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위해 양도 직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사례 다수 발생 → 조세회피 방지 필요
 - (비과세) 1세대 1주택 비과세* 적용 시 보유기간을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일부터 기산
 - * 비과세 요건 : ①양도일 기준 1세대 1주택자 + ②2년 이상 보유 + ③(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) 2년 이상 거주
 - (장기보유특별공제) 1세대 1주택인 경우, ①, ② 중 큰 금액 적용
 - ① 전체 보유기간(취득일~양도일)에 대해 일반 공제율(최대 30%) 적용한 금액
 - ② '용도변경일~양도일'을 보유기간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공제율(최대 80%) 적용한 금액

② 주택 개념 구체화로 세부담에 변화가 있는지?

- 「주택법」 규정, 과세관청 집행 실태 등을 반영한 개정으로 주택 여부 판정 및 양도소득세 등 세부담에는 변화 없음
 - 세법상 주택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납세자·과세관청간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③ 적용시기

- (주택 개념 구체화) '24.1.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
- (보유기간 특례) 납세자 예측가능성 등 감안, 1년 유예기간을 두어 '25.1.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

[7]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보완

(상세본 77p)

① 제도보완 취지

- 수출자의 원산지증명 편의를 위해 도입된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가 보다 신뢰성 있게 운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제도 보완
 - 원산지인증수출자란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명능력이 있다고 인증받은 수출자로서, ①FTA협정이 정한 범위에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하고, ②국내법령에 따라 원산지증명에 관해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음(FTA특례법 제12조)
 - FTA협정관세 적용 과정에서 수출자가 어려움을 겪는 원산지 증명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
 - 제도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 자격 신청 과정에서 제출서류 조작 등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,
 - 「FTA특례법」에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해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

3. 과세형평 제고 및 기반 강화

(1)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(상세본 78p)

① 현금영수증 발급 시 혜택은?

- (발급 사업자에 대한 혜택) 현금영수증 발급 세액공제 적용
 -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.3% 공제
- (수취 근로자에 대한 혜택) 신용카드·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적용
 - 현금영수증, 신용카드, 직불카드 등의 연간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

②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경우는?

-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·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
 - (미발급 가산세) 미발급금액의 20%
-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경우에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 경우
 - (미발급 가산세*) 소비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5%

*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제외

(2) 플랫폼 종사자의 소득파악 기반 공고화

(상세본 79p)

①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소액부징수 개요

- 징수하는 세액보다 징세비용이 과도한 경우 등을 고려해 징수 세액이 소액인 경우 해당 세액을 징수하지 않는 제도
 -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(세율 3%, 지방소득세 제외)의 경우 1,000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음
 - 다만, 원천징수만 배제될 뿐 해당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·납부의무는 있어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은 아님

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

- (개정내용)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중 계속적·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인적용역 소득에는 소액부징수의 적용 예외 인정
- (개정취지) 음식배달용역 등 인적용역의 경우 건별로 소득을 지급하는지 또는 주/월별로 지급하는지에 따라서 원천징수 적용 여부*가 달라질 수 있어 원천징수 적용기준을 명확히 함
 - * 건당 소득에 원천징수시 원천징수세액이 1,000원 미만으로 원천징수 배제될 수 있으나, 주·월단위로 소득 지급시 원천징수세액 1,000원 초과하여 원천징수대상에 해당
- (세부담 영향)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납부할 세액과 원천징수세액간 차이가 있는 경우 차액은 환급되므로 실제 세부담에는 영향 없음

※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국세청은 납부·환급세액 등을 안내, 간편하게 납부·환급할 수 있는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중

(3)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범위 합리화

(상세본 80p)

① 제도 개요

- (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) 자회사등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지분율에 따라 일정비율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

< 지분비율에 따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 >

| 피출자법인 지분비율 | 20% 미만 | 20%이상~50% 미만 | 50% 이상 |
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|
| 익금불산입률 | 30% | 80% | 100% |

- (익금불산입 배제) 단기 보유주식 배당 또는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

- 배당기준일 전 3개월 내 취득주식 배당금(포트폴리오 투자)
- 배당금 소득공제(법인단계 이중과세 조정)로 법인에서 과세하지 않은 소득
- 100% 감면 법인 배당금(수도권 밖 본사이전, 조특법상 조세감면)

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

-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 및 이중과세 조정이 필요없는 경우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에 추가
 -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평가 적립금 금액 배당
 - 유상감자시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전 및 그 밖의 재산가액 등
- ⇒ 이중과세 조정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

V

기타

(1) 연결납세방식 조기 포기 허용 예외사유 신설

(상세본 89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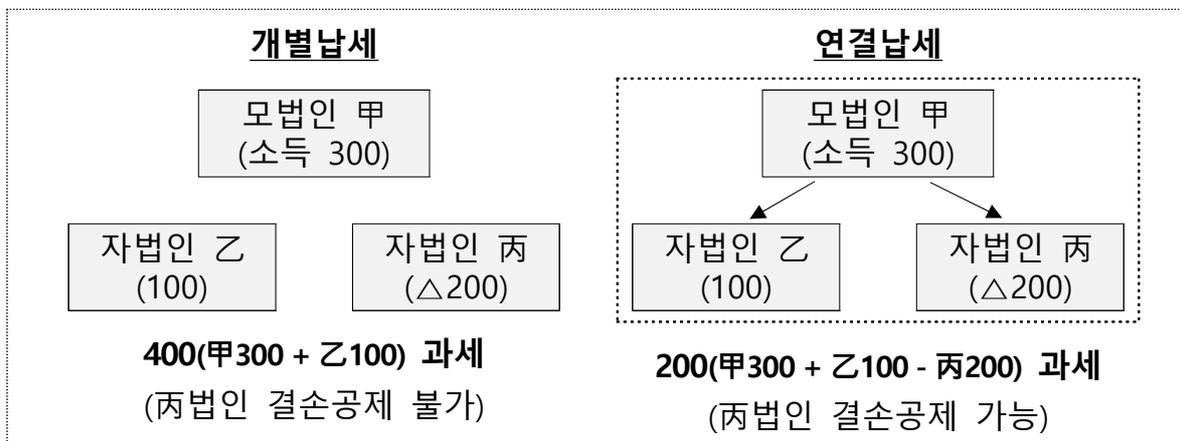
① 연결납세 제도 개요

□ 모·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하여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합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

* '10년 사업연도부터 시행

○ (제도취지) 기업구조 선택에 대한 조세중립성 확보

○ (연결대상) 연결모회사가 출자지분의 90% 이상 보유하는 자회사



② 연결납세방식의 포기

□ (현행 제도) 연결납세 신청 후 5년간 연결납세방식 의무 적용

○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경우 연결납세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

□ (개정안) 연결범위 확대*에 따라 연결집단에 연결자법인이 추가된 경우 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연결납세방식 포기 허용

* '24년부터 연결범위가 100% 보유 자회사에서 90% 보유 자회사로 확대

⇒ 연결납세방식 적용에 대한 납세자 선택권 부여

(2)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

(상세본 110p)

① 제도 개요

-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*을 증여일로부터 10년 내 양도하는 경우, 증여자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**하는 제도

* 토지, 건물,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

**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

② 제도 효과

- 이월과세 적용으로 증여자의 취득 시점부터 누적된 자본이득을 온전히 과세함으로써 공평과세 실현

- 이월과세 미적용 시 '증여재산 공제*' + 증여 당시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함에 따른 양도차익 감소' → 조세회피 가능

* 공제한도 : (배우자) 6억원 (직계존비속) 5천만원(미성년자 2천만원)

< 사례 >

'갑' 주택취득('15년, 2억원) ⇒ '갑→을' 증여('20년, 6억원) ⇒ '을' 양도('24년, 10억원)

※ '을'은 '갑'의 배우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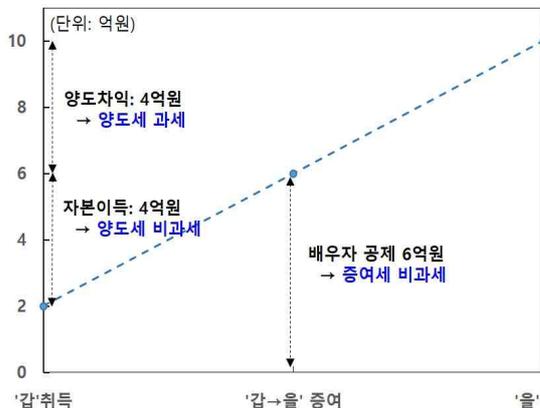
- ① 이월과세 미적용: 양도차익 4억원(10억원-6억원*) 과세

* 취득가액 : 증여 당시 증여가액 = 6억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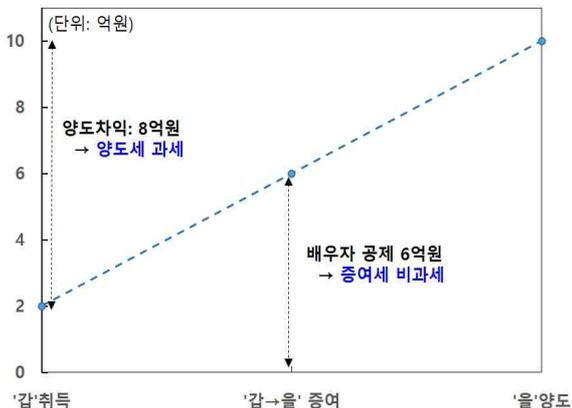
- ② 이월과세 적용: 양도차익 8억원(10억원-2억원*) 과세

* 취득가액 : '갑'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 = 2억원

①이월과세 미적용



②이월과세 적용



(3) 간이과세 포기 철회 근거 마련

(상세본 119p)

① 간이과세 제도 개요

- (개요) 기장능력 등이 부족하여 신고·납부 등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간이과세 제도* 운영

* ('77년) 과세특례제도로 도입 → ('00년) 간이과세제도로 명칭 변경

- (기준) 직전연도 연 매출액 8,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

※ 연 매출액 4,800만원 미만은 영수증 발급,

연 매출액 4,800만원 이상~8,000만원 미만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

- (특례) 매출액만으로 세액계산*이 가능하며, 연 1회 신고

* 과세표준(공급대가)×당해 업종별 부가가치율(15%~40%)×10%,

- 연 매출액 4,800만원 미만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

② 간이과세 포기 철회 도입 취지

- 간이과세자는 필요*에 따라 간이과세자 특례를 포기하고 일반 과세 적용이 가능하나, 포기 신고 후 3년 동안 계속 적용 의무

* 거래 특성 상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등

- '21년 간이과세 제도 개편*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에 3년 이내라도 간이과세 포기 철회를 허용

* (종전) 연 매출액 4,800만원 미만(영수증 발급) → (현행) 연 매출액 4,800만원 미만(영수증 발급), 4,800만원 이상~8,000만원 미만(세금계산서 발급)

-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면서 세액계산을 간편하게 적용 받도록 간이과세 적용

[4]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부가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 종료

(상세본 121p)

① 천연가스(CNG)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종료 취지

□ 동 특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매연 배출이 많은 경유버스를 CNG 버스로 대체 보급하기 위한 것으로, **그간 정책 목표 달성***

* '00년 도입되어 현재까지 운용 중으로 '21년 기준으로 전국 시내버스의 약 75%가 CNG 버스임

○ 특히 보다 강화된 환경 개선 목표에 맞춰 전기·수소차의 보급 **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정책*과의 정합성 유지 필요**

* 저공해차 분류체계 개편('24년 CNG 버스 제외 예정)에 따라 전기·수소전기 버스로의 수요 전환을 위해 CNG 버스 구매지원 예산사업 종료 예정('24년)

□ 동 특례를 종료하더라도 현재 전기·수소전기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신규 수요는 이를 통해 보완 가능

(5)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확대

(상세본 127p)

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

- (개요) 거주자·내국법인이 해외금융기관에 개설·보유한 해외 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는 제도
- (신고 대상) 신고대상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잔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
 - 은행 예·적금 계좌, 증권거래 계좌, 파생금융상품거래 계좌 등 보유한 현금·주식·채권·펀드·보험·가상자산 등 신고
- (신고의무 면제) 단기 거주 외국인·재외국민,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, 타 법률상 관리·감독이 가능한 경우
- (제재규정) 과태료 부과,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 등
 -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~20% 과태료 부과(20억원 한도)
 - (신고위반금액이 50억원 초과시) 명단공개, 형사처벌* 가능
 - *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3~20% 벌금
 - *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음
 - (소명요구) 신고의무 위반시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할 수 있음(미소명시 20% 과태료)

② 개정 취지

-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탈세 방지, 정보수집 등을 위해 거주자·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·파악하는 것으로,
 - 근로·퇴직소득 비과세를 적용받는 국제기관의 종사자 및 조약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에 대해서도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불필요하여 신고의무 면제대상을 법령으로 명확화

[6] 용도세율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

(상세본 147p)

① 제도 개요

- 용도세율 제도란 수입통관 단계에서는 동일한 물품이나, 통관 이후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물품에 대해 사전에 세관장에게 낮은 세율의 적용을 신청하는 제도
 - 세관당국은 용도세율을 적용받은 물품이 수입 후 일정기간 당해 용도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사후관리*
 - * 용도의 사용 또는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 추징
 - 현행 관세법은 용도세율 적용대상을 할당관세 등 9개로 한정
 - 1) 적용대상(9개) : 잠정관세, 긴급관세, 특정국물품긴급관세,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, 조정관세, 할당관세, 계절관세, 국제협력관세, 일반특혜관세
 - 2) 제외대상(4개) : 덤핑방지관세, 상계관세, 보복관세, 편익관세

② 개정 내용

- 용도세율 적용 대상에 덤핑방지관세 등 4개 탄력세율제도를 포함하고 관련 규정 합리화 등 정비
 - ① (용도세율 적용대상 확대) 덤핑방지관세, 상계관세, 보복관세, 편익관세에서도 부과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차등적인 관세율을 부과하여 정책효과성 제고* 및 납세자 재산권 보장
 - * 예)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수질정화제용 수산화알루미늄에만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면 충분하나, 용도세율을 적용할 수 없어 인조대리석용 수산화알루미늄에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문제 등을 정밀하게 해결 가능
 - ② (용도세율 신청 제외 합리화) '특정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미리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(전용물품)' 신청 제외*
 - ③ 전용물품 확인 받은 경우 사후관리 대상 제외됨을 명확화

[7] FTA협정관세 적용 물품의 보정이자 면제사유 명확화

(상세본 156p)

① 보정제도 개요

- 관세법령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을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'보정제도'를 운영
 -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과소신고 사실을 알게 된 경우, 세관장에게 세액보정을 신청하고 그 다음날까지 부족세액 납부(「관세법」 제38조의2)
 - 이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보정이자를 징수하되, 과소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정이자를 면제
 - * 「관세법」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
 - × 금융회사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(연 29/1000)

② 개정 취지

- FTA 협정관세 적용 물품의 경우 보정이자가 면제되는 사유를 「관세법」이 아닌 「FTA특례법」 상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
 - 납세자의 보정이자 면제사유에 대한 입증부담을 경감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
 - ① FTA협정관세 적용*에 있어, 수입자 귀책 없는 원산지증빙 서류의 오류 등을 보정이자 면제사유에 포함하되,
 - * FTA협정관세는 수입자가 아닌, 상품을 수출한 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·발행한 원산지증빙서류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됨
 - ② 구체적인 면제사유는 「FTA특례법 시행령」에서 정할 계획

(8) 공매제도 개요

(상세본 163p)

① 제도 개요

- 강제징수 절차* 중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는 단계에서 일반인에게 압류재산을 공개 매각하는 제도

* 체납자의 재산 ①압류 → ②매각 → ③청산

- 관할 세무서장이 공매 대행 의뢰 →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 대행하고 매각대금을 배분하여 체납액 충당

② 공매 절차

- 공매공고 → 입찰 및 개찰 → 매각결정 → 매수대금 납부 → 소유권 이전 및 금전 배분

- (공매공고) 공매재산 현황, 입찰기간, 개찰일시, 배분요구의 종기, 매각결정기일 등을 공고하고 체납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함

- (입찰·개찰) 공매보증을 제공하며 매수신청을 하고 개찰일에 매수신청인 중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결정함

- (매각결정) 매수인 제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결정 기일에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공매재산의 매수인으로 결정

- (매수대금 납부)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면 공매재산을 취득하고 공매재산의 권리이전 절차를 진행함

- (배분) 배분기일에 매각대금을 배분계산서*에 따라 공매재산과 관계되는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함

* 공매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체납자, 채권자 등에게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적은 문서

(9) 공매재산 취득 시 매수대금의 상계제도 신설

(상세본 165p)

① 도입취지 및 내용

- (취지) 압류재산 매수 부담 완화 및 강제징수 기간 단축
- (내용) 압류재산의 매수인이 채권자인 경우 매수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매수대금에서 채권액을 상계한 금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*
 - * 현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의 경우 매수대금 상계 가능

② 제도 개요

- 매수인이 공매재산의 채권자인 경우 매수대금 납부 시 매수대금에서 채권액을 차감한 차액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
 - (대상) 공매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, 전세권을 설정한 자 및 등기된 임차권이 있거나 대항력이 인정되는 임차인* 등
 - *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§3의2② 또는 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」 §5②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이 있는 임차인
 - (신청기한) 개찰일 이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
 - (상계결정) 매각결정기일에 상계 여부 결정*
 - * 배분순위에 비추어 실제로 배분받을 금액이 없는 등 사실상 차액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차액 납부 불허
 - (납부방법) 배분계산서* 원안에 따라 납부할 차액을 계산하고 배분기일까지 차액 납부
 - * 공매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체납자, 채권자 등에게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적은 문서
 - (이의제기)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해 다른 채권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배분기일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 납부

〈 상계제도 도입 시 공매절차 흐름도 〉

